#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의 안 제안연월일: 2024. 7. . 번호 제상이라이다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의원 (2200037)	2024.5.30.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4.7.2.) 상정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4.7.18.) 상정 후 대체토론/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2200563)	2024.6.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4.7.18.)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7.18.)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 자는 제외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다. 국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되, 현역병·군간부후보생·전환복무자 등은 2년 이내로 함(안 제7조제1항).
- 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3. 부대의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으로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따른 읍·면지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다목,「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마목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마련한다.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5조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 회복지워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에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

#### 1. 지급 대상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 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2. 지급 제외

- 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다만,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비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④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가의 보조) 국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
- 제7조(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환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 생, 전환복무된 사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사용이 곤란한 사람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소지자는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 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대상 선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국비 보조를 위한 사전 절차의 이행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